Ⅰ. 序論

최근 북한은 198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심각한 經濟難을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自立經濟 달성과 사회주의 국가와의 상호교류 확대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서 시행하여 온 對外經濟政策을 개방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술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1984년에 「合營法」을 제정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資本導入政策을 입안했고, '91년에는「自由經濟貿易地帶法」을 통하여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는 등 經濟特區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92년에는 「外國人投資法」, 「合作法」 및 「外國人企業法」등 投資 3法을 제정하고, 아울러 그 후 기타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서방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經濟開放政策으로 선회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對外經濟政策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은 1988년부터 남북간의 물자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推進하였다.[1] '88년 이래 시작된 南北物資交易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6년에는 南北韓 搬出入 通關件數 및 金額이 3,383건, 2억 5,200만 달러에 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中國, 日本에 이어 北韓의 3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활성화는 人的交流는 물론 委託加工貿易의 擴大[2] 및 이를 위한 생산설비의 搬出入 增加, 北韓內 韓國工團의 설

1. 우리정부는 '94년 11월에 「南北經濟協力 活性化措置」를 발표, 우리기업의 북한사무소 설치 및 500백만 달러 규모 이하의 직접투자를 허용하였으며 위탁가공용 시설재의 북한 반출입 및 기업인·기술자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대북한 경제협력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치 등 對北韓 投資事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의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역에서의 개발계획에 우리나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이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사업 등에 관한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保險需要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근래 북한의 심각한 經濟難으로 인한 대북 쌀 지원 등 각종 救護物資의 輸送 및 對北 輕水爐 支援事業의 진척으로 남북간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統一에 대비한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의 준비 및 대응책의 重要性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保險業界 측면에서는 이러한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통일 전후의 南北間 保險交流 및 北韓保險市場 進出을 대비하여 國內 保險業界의 對應方案 樹立을 준비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및 북한보험산업 현황, 남북경제협력의 進展에 따른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北韓保險市場 進出 可能性을 검토하고, 獨逸 統一 以後 서독보험회사의 동독보험시장 진출전략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향후 통일에 대비한 국내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북한경제의 현황과 對外經濟政策의 변화배경 및 동향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南北經濟協力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개관해 본다. 제Ⅳ장에서는 북한보험제도의 체계, 특징 및 보험관계법에 대하여 살펴본 후, 북한의 잠재적 보험시장 규모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독일통일과 보험산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Ⅵ장에서는 南北 經協 增大 및 統一에 대비한

2. '96년 말 현재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 전체 교역량의 24.7%(승인기준)인 6,033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국내보험산업 對應方案에 대하여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 요약 및 결론을 맺었다.